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78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최민희 · 김 현 · 채현일
정진욱 · 김한규 · 민형배
김용만 · 노종면 · 김우영
박해철 · 황정아 · 박민규
양부남 · 이광희 · 박주민
이정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생략)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 -----.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한다.
<신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